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4238   |
| 의 퇴 인 | 김성회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6.1.5. |
| 추계번호  | 25D6185   |

#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, 추진실적 평가, 중앙 및 시·도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18억 5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5억 5,100만원(연평균 7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 평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기본계획 수립<br>(안 제7조)             | 177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77   | 35  |
| 시·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<br>(안 제9조)     | 1,254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,254 | 251 |
|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<br>(안 제10조)     | 61    | 63   | 64   | 65   | 67   | 320   | 64  |
|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<br>설치·운영(안 제13조)   | 20    | 20   | 20   | 20   | 20   | 100   | 20  |
|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<br>설치·운영(안 제15조) | 340   | 340  | 340  | 340  | 340  | 1,700 | 340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852 | 423  | 424  | 425  | 427  | 3,551 | 710 |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7조<br>(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| -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8조<br>(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      | -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3  | 안 제9조<br>(시·도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| -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5년을 단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시·도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0조(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)               | -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, 평가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<br>-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부문별, 시·도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12조<br>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)       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6  | 안 제13조(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)                   | -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둠<br>-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<br>-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   | 의무규정 |
| 7  | 안 제15조(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)                 | -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심의·조정을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16조(시·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)         | -시·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·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정부는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9  | 안 제17조(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)        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조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0 | 안 제19조(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·운용)              | -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1 | 안 제20조(민간기금의 조성)              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금에 대하여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2 | 안 제21조(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)                   | -정부는 투·융자 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,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3 | 안 제24조(시설비 등의 지원)    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유·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14 | 안 제25조(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)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   | 재량규정 |
| 15 | 안 제26조(교육·훈련 및 홍보)   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,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      | 재량규정 |
| 16 | 안 제27조(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)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상·재정상·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7 | 안 제28조(국제협력 등)               |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,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·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7조<br>(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8조<br>(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           | -    | 미대상: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 조직 및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 |
| 3  | 안 제9조<br>(시·도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0조(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)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2조<br>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)               | ×    |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 추정이 곤란함 |
| 6  | 안 제13조(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)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  | 안 제15조(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)        | ○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16조(시·도별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) | × |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및 조직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지원 예산을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|
| 9  | 안 제17조(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)       | × |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사업 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|
| 10 | 안 제19조(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·운용)     | × | 기금 운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출연금 규모 추정이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안 제20조(민간기금의 조성)             | × |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재정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안 제21조(사회연대금융중개기관)           | × | 사회연대금융중개기관 사업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 예산 추정이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  |
| 13 | 안 제24조(시설비 등의 지원)            | × | 사회연대경제조직에게 지원되는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안 제25조(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)         | × |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, 감면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|
| 15 | 안 제26조(교육·훈련 및 홍보)           | × |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| 안 제27조(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) | × |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안 제28조(국제협력 등)               | × |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7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 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안 제9조에 따른 시·도 지역별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유사 계획 예산을 준용함
  - 지역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안 제13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안 제15조에 따라 시·도에 설치되는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40명으로 가정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함
 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<sup>1)</sup>으로 가정
 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<sup>2)</sup>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| 구분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2.0  | 1.9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

□ 안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,7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<sup>3)</sup>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기본계획 수립<br>(안 제7조) | 177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77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시·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(안 제9조)

□ 안 제9조에 따라 17개 시·도에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억 5,4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‘제2차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’(2023년) 예산 68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

[표 3] 시·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    | 2028 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시·도 지역별<br>기본계획 수립<br>(안 제9조) | 기본계획 수립(a) | 73.7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·도(b)     | 17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(a×b)    | 1,254 | -    | -    | -    | 1,254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(자료: prism.go.kr)
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  
-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#### 다.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(안 제10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서 부문별, 시·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3억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-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유사사례인 ‘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’ 연구용역비 평균액(58백만원)<sup>4)</sup>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4]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<br>(안 제10조) | 61   | 63   | 64   | 65   | 67   | 32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라.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구성(안 제13조)

□ 안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,000만원 등 5년간 총 1억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
－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20인 × 25만원 × 연 4회 = 2,000만원

[표 5]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<br>설치·운영(안 제13조) | 20   | 20   | 20   | 20   | 20   | 10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마.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구성(안 제15조)

□ 안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4,000만원 등 5년간

4)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집행액: 2024년 60백만원, 2023년 60백만원, 2022년 54백만원

총 17억원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은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3조의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동일하게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17개 시·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  -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20인 × 25만원 × 연 4회 × 17개 시·도 = 3억 4,000만원

[표 6]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  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<br>설치·운영(안 제15조) | 340  | 340  | 340  | 340  | 340  | 1,70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바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5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5억 5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  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기본계획 수립<br>(안 제7조)             | 177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77   |
| 시·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<br>(안 제9조)     | 1,254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,254 |
|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<br>(안 제10조)     | 61    | 63   | 64   | 65   | 67   | 320   |
|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<br>설치·운영(안 제13조)   | 20    | 20   | 20   | 20   | 20   | 100   |
|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<br>설치·운영(안 제15조) | 340   | 340  | 340  | 340  | 340  | 1,700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852 | 423  | 424  | 425  | 427  | 3,551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임홍연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임홍연 | 02-6788-4673 | limhy@nabo.go.kr |